

『2014년 창업인턴제 (Venture For Korea)』 참가자 모집 공고

창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벤처·창업기업 현장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『2014년 창업인턴제』 참가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7월 17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1

사업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창업 전 벤처·창업기업의 인턴근무기회 제공으로 현장경험을 통해 경영·마케팅 등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창업성공률 및 생존율을 제고

□ 사업 내용

- (지원대상) 대학(원) 재학(학부 4학기 이상 수료) 및 미취업졸업생(졸업 후 1년 이내)으로 ① 창업의지가 있고, ② 구체적 창업계획이 있는 자
- (참여자격)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예비창업자*
*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장을 폐업 했을 경우 신청가능
- (선발규모) 70명 내외
- (지원내용) 인턴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(최대 80만원)하고, 실제창업으로 연결 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(최대 1억원)을 조건부지원
- (인턴기간) 선발된 인턴은 1년 근무가 기본이며, 고용기업(인턴연수 시행기업)과 인턴의 합의 하에 추가 1년 연장 가능

□ 기본요건

- (신청자격) 대학(원)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

| 구 분 | | 자격 요건 |
|------|-------|--|
| 대학생 | 2·3년제 | ▪ 학부 3학기 이상 수료자 (*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) |
| | 4년제 | ▪ 학부 4학기 이상 수료자 (*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) |
| 대학원생 | | ▪ 대학원(일반·전문·특수) 재학생 |
| 졸업생 | | ▪ 대학(원) 졸업 후 1년 이내인 미취업 졸업생 (*13년 2월 졸업생까지 포함) |

*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원격대학(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) 포함

** 공고일 기준, 대학생 자격 요건 충족 후 중퇴 한지 1년 이내의 자는 신청가능

- (필수요건) 최소 1년 이상 창업기업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

* 휴학요건 및 제한은 각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전 필히 확인 후 신청

□ 제한요건

-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을 통해 지원받은 자,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(중단·중도포기자 포함)

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붙임 2.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

-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로 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

< 협약 완료 후 신청했을 경우 창업지원금 지원조건 >

| 지원금액 | 인턴근무 후 창업 시 지원조건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천만원 이내 | ▪ 평가결과 확정된 창업지원금을 전액지원 |
| 1천만원 초과 | ▪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확정된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|

-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,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인턴 근무 후 창업 시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 - * 붙임 2.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,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참여 가능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 - * 단,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
-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3


신청서 제출

- 신청·접수기간 : 2014. 7. 17(목) ~ 2014. 7. 31(목), 16:00
 - *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사업관리시스템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
- 제출방법 : 창업넷(www.changupnet.go.kr)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(마감일까지 업로드 완료분에 한함)

< 주요 신청절차 >

◆ 창업넷 접속 ▶ 개인회원가입 ▶ 로그인 ▶ 창업교육 ▶ 창업인턴제
 ▼
 제출서류 업로드 ◀ 기본정보참여신청서 입력 ◀ 사업신청 ◀ 인턴연수기업확인

- (제출절차)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준비(12일간) → 인턴연수기업 사전 선택 및 제출(4일간) 등과 같이 2단계로 준비·제출

| | | | |
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단계 | 제출서류 준비 | ▪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| '14.7.17 ~ 27. |
|  | | | |
| 2단계 | 기업선택 및 신청 | ▪ 인턴연수기업 공개·선택(2순위) 및 사업신청 | '14.7.28 ~ 31. |

□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증빙관련 서류 일체

< 제출서류 안내 >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필수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학 / 졸업(예정) 증명서 ▪ 사업계획서 |
| 해당자 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격증 사본 ▪ 경력 증명서 ▪ 평가사항 증빙서류* |

* 평가사항 증빙서류 : 붙임 1.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 세부내역 참조

4

평가 및 선정

- 평가 및 선정방법 : 요건검토 → 서면평가 → 발표평가 등 총 3단계로 각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
 - (요건검토) 신청자 기본요건 및 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서면평가 대상자로 추천
 - (서면평가) 인턴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역량, 인턴근무 및 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정인원의 2배수 추천
 - (대면평가)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 및 지원필요성, 추진역량 등을 평가하고, 인턴연수시행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선정*

* 사전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업-인턴간 매칭에 성공했을 경우 최종 선정

□ 평가 절차



5

추진일정

| 구 분 | 내 용 | 일 정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◆ 사업공고 |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| '14.7.17 ~ '14.7.31 |
| ◆ 서면평가 | 신청자 서면평가 진행 | 8월 1제주 |
| ◆ 대면평가 | 대면평가 진행 | 8월 2제주 |
| ◆ 선정자 공고 | 선정자 공고 및 사전교육 안내 | 8월 2~3제주 |
| ◆ 사전교육 | 선발인턴 사전교육 및 매칭 | 9월 1제주 ~ 9월 2제주 |
| ◆ 계약체결 | 인턴-기업 간 계약 | 9월 3~4제주 |
| ◆ 인턴근무 | 선발인턴 근무 시작 | 10월~ |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

기타사항

□ 유의사항

- 지정신청서는 창업넷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
- 同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공고 명시사항을 준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히 접수확인 (창업넷 “마이페이지”에서 확인)
- 최종선정 후 선정자는 7일간 사전교육(9월 초~중순 예정)에 참석필수

□ 접수 및 사업안내

-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: ☎ 042 - 480 - 4466
- 중소기업 종합상담 : 국번없이 1357 누르신 후 3번
- 신청·접수 및 종합안내 시스템 : "창업넷" (www.changupnet.go.kr)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www.smba.go.kr

붙임 1.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

『 창업인턴제 (Venture For Korea) 』 창업관련 활동 인정항목

| 평가 시 반영 항목 | | | | |
|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구분 | 순번 | 평가 사항 | 확 인 | 가점 |
| 인정항목 | ① |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자 | 동아리활동 지원기관의 확인증 등 ¹⁾ | 2점 |
| | ② | 창업강좌 수강이력 (정부·지자체 개설) | 해당 인증·확인·증명서류 ²⁾ | 2점 |
| | ③ | 창업에듀 수강 (20시간 이상) | 강좌 수료증 | 1점 |
| | ④ | 창업경진대회 참가 (정부 지자체, 교내, 민간 개최 포함) | (참가) 참가접수증, 참가서류 등 | 1점 |
| | | | (입상) 상장 사본 ³⁾ | 3점 |
| | ⑤ | 앱 창작터 수료기업 (중소기업청 지정) | 전문 및 심화과정 수료증 중 1개 | 2점 |
| ⑥ | (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분야의)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재산 출원·등록 | 해당 인증·확인·증명서류 | 3점 | |
| 가점항목 | ① |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 | 주민등록증 사본 | 1점 |
| | ② |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 | 장애인 증명서 | |

※ 실제 인정사항에 해당하는 활동 및 성과를 수행했다 하더라도, 모든 가점사항은 서류로 증빙가능해야 하고, 서류상 근거가 미비할 시 불인정 될 수 있음

1)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자생적으로 결성된 창업동아리 일 경우에도, 그간 활동을 증빙할 만한 공신력 있는 활동 증명서류 제출할 경우 가점으로 인정

2) 단순 경영·마케팅·회계 등 경영학 일반에 관련된 강좌는 제외하며, 최소 20시간 이상 인정

3) 팀 참가로 입상하여 상장에 팀이름이 기재된 경우, 상장사본 및 팀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붙임 2.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

|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수혜년도 | 2011년 ~ 2014년 |
| 지원제외 대상사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·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·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·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· (제조기반)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·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(제조, 지식) ·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·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·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· 앱창업전문기관운영사업 (앱 개발자금, 앱 사업화자금) · 창업선도대학(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) |

| 지원제외 대상 업종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No | 대상 업종 | 코드번호 세세분류 |
| 1 | 금융 및 보험업 | K64~66 |
| 2 | 부동산업 | L68 |
| 3 |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 | I55~56 |
| 4 | 무도장 운영업 | 91291 |
| 5 |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| 9112 |
| 6 |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| 9124 |
| 7 | 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) | 96 |
| 8 |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|